

전 문

|                           |       |
|---------------------------|-------|
| 제1장 총칙 .....              | 1~13  |
| 제2장 학생총회 .....            | 14~21 |
| 제3장 학생총투표 .....           | 22~31 |
| 제4장 운영위원회 .....           | 32~39 |
| 제5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 | 40~50 |
| 제6장 집행위원회 .....           | 51~54 |
|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         | 55~60 |
| 제8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   | 61~67 |
| 제9장 재정 .....              | 68~75 |
| 제10장 선거 .....             | 76~81 |
| 제11장 징계 .....             | 82~87 |
| 제12장 회칙개정 .....           | 88~89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 전문

신한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으로 새로운 시대 방전에 공헌하여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는 신한대학교의 창학이념과 교육목적을 바탕으로 한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기술개발 능력과 응용능력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 속 지식 정보화 사회와 고도 산업기술 사회에서 요구되는 첨단 공학 지식과 전문 기술을 연구하고, 건전한 교양교육과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최신 공학 이론과 실험 실습을 결합한 선진공학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는 대학의 목적과 이념을 기초로 하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치기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그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을 공표하는 바이다.

##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대학 문화 창출과 자율적 발전 도모에 있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지리 탐구와 학문, 사상의 자유를 통해 사회와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기도관에 둔다.

###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 ② 본회의 회원 중 재학생은 정회원이 된다.
- ③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은 준회원이 된다.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개선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회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관련된 학교운영에 대하여 참여하고 알 권리를 갖는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자치적 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본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
- ⑥ 본회의 회원은 학과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⑦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⑧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구성)

-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제7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④ 본회의 권위는 오직 신한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으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8조(대표자의 책임)** 제6조 제1항을 구성하는 모든 인원은 본회의 대표자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겸직 금지)

-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 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단
  2.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4. 동아리연합회장단
5. 각 동아리 회장단
-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
  1. 소프트웨어융학과 집행위원
  2. 공과대학 집행위원
  3. 동아리연합회 각 분과장
- ③ 각 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임기를 마친 후 마지막 직을 수행하게 된다.

#### 제10조(세칙)

- ① 본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칙을 별도로 구성한다.
- ② 회칙의 우선순위는 본칙, 세칙으로 하며, 충돌 시 상위규정을 우선시한다.
- ③ 세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하위규정에 따른다. 본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세칙에서 따른다. 단,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요건 해석을 따른다.

#### 제11조(사무처리)

- ① 본회의 각 기구의 사무처리는 간소화·표준화와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본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 제12조(기록물 관리)

- ① 본회의 공식적인 모든 활동은 기록되고, 기록물이 각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훼손할 수 없다.
- ④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 최소 1년을 보관 기간으로 한다.
- ⑤ 본회가 생산·수집하는 모든 기록물은 회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⑥ 본회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만 열람·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기록물 생산·수집·보존)

- ①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처리와 대표자의 행위는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 ② 본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③ 기록물의 생산·수집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수정·훼손할 수 없다.

## 제 2 장 학생총회

제14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5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의 결정권
2.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결정권
3. 학생총투표 시행 결정권
4. 이외의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결정권

제17조(안건위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학생 총회 개회 불발 또는 중도 폐회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18조(소집)

-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3. 본회 회원 1/5 이상의 소집요구
- ② 긴급총회는 의장의 판단 하에 소집 가능하다.

#### 제19조(소집공고)

- ① 의장은 학생총회 소집을 개회 7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소집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2. 개회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20조(의결)** 학생총회는 본회 정회원과 준회원의 1/5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의 탄핵 부의안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1조(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의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및 궐위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운영위원 중 집행위원회의에서 인준된 1 인 혹은 제 49조 제5항의 권한대행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 3 장 학생총투표

**제22조(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투표권)** 본회 정회원은 투표권을 갖는다.

**제24조(시행)** 학생총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1. 학생총회의 시행결정
2. 11월 총선거 관련 운영위원회의 시행결정

#### 제25조(시행 공고)

- ①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 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학생총투표 시행 일시
  2. 학생총투표 투표소 설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 제26조(의결)

- ①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의 과반수 참여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소속 학과·학년의 특수한 사정이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본교 이외의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수학하는 자는 제 1 항의 성립 여부 판단 시 정회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③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정회원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27조(투표 기간)

- ① 투표 기간은 최소 2 일로 정한다.
- ② 투표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투표율이 정회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을 공휴일 제외 최장 2 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28조(결과 공고)**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29조(효력)**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투표 시행일을 결정한다.
- ② 학생회장단은 학생총투표의 결과에 따라 본회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결과를 임의 변경, 번복, 첨가 및 삭제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제30조(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 시행이 결정되면 학생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 전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③ 투표관리위원회는 학생총투표 결과를 공지할 의무를 가지며, 개표를 책임진다.
- ④ 투표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 및 11월 총선거 관련 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⑤ 학생총회 의장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31조(안건)** 학생총회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한다.

- ① 학생총회의 시행결정에 따른 안건
- ② 11월 총선거

## 제4장 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최고 운영 기구로서,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구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제34조(운영위원의 의무)**

- ① 운영위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과정 전반에서 소속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은 대표로서 직무에 책임을 갖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제35조(의장)**

-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 유고 시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유고 및 궐위 시 혹은 직무정지 처분의 경우, 제38조 제3항 제1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위원회 개최 직후 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집행위원회의의 인준을 통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③ 의장은 직접 혹은 집행위원회 중 1인을 지정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알리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36조(권한)**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연서를 통한 본칙의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심의·의결하여 학생총회에 학생회칙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집행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업무)**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학생회칙 내 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② 본회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③ 본회의 재반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소집)**

-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긴급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 상호 간의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정기회의는 신한대학교 행함관 3층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실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있으면 회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의 개최 전 운영위원들에게 회의 장소의 변경이 공지 되어야 한다.
  3. 학생회장은 임기 시작 직후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요일과 시각을 운영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
- ④ 긴급회의는 의장의 판단 하에 소집 가능하다.

**제39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 5 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제40조(지위)**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회장의 궐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학내 회의에 학과 학생의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제41조(임기)**

-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후 익년 1 월 1 일부터 당해년도 12 월 31 일 까지로 한다.
- ② 이하 각 집행위원회의 임기도 이에 준한다.
- ③ 학생회장단 구성을 위한 11 월 총선거가 무산되어 익년 3 월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익년 3 월 보궐선거 종료 시까지 학생회장단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42조(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업무 인계)**

- ① 학생회장단 당선자는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공고 후, 48 시간 이후부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업무 인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업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전임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석
  3. 후임 집행위원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 4.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 기타 업무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신분보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44조(의결기구 관련 권한)**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의를 운영하는 의장이 된다.

#### **제45조(집행기구 관련 권한)**

- ①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②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내 부서내의 부장, 차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③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내 부서를 지휘와 감독한다.
- ④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의 결정된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제46조(대외적 권한)**

- ① 학생회장은 학교 행정 문제에 대해 본회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여 대변할 수 있으며, 학교 당국에 본회 회원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 **제47조(의무)**

-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에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회장단은 본회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학생회장단은 후임 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제48조(사퇴)**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단, 의식불명, 혼수상태,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궐위 공고를 진행한다.

#### **제49조(탄핵)**

-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 부 학생회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에서 발의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탄핵안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운영위원회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
  2. 본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 ③ 제 2 항의 연서가 집행위원회로 제출될 경우, 집행위원회의장은 48 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 2 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 ④ 운영위원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⑤ 제 2 항의 연서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학과운영위원 중 1 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제 2 항의 연서 제출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의 학생 총 투표 부의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은 해당 학생총회의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인준을 받아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⑥ 학생총회는 제20조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의 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한다.
- ⑦ 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의 학생총투표 부의 의결 후, 탄핵안은 제26조에 따라 의결한다.
- ⑧ 학생회장만 탄핵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⑨ 탄핵안 가결 후 제 5 항의 권한대행은 차기 학생회장단의 당선 혹은 비상대책 위원장단의 선출 전까지의 임기를 갖는다.

**제50조(직무정지)**

- ① 제49조 제5항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제76조 제1항의 대상은 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의 부의가 부결되거나, 학생총투표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때, 제49조 제5항의 임시의장은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② 제1항의 학생총회의 탄핵부의안 부결 및 학생총투표 탄핵안 부결 시, 제49조 제1항의 대상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며, 제49조 제5항의 임시의장의 권한대행은 즉시 임기를 종료한다.

**제 6 장 집행위원회**

**제51조(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2조(구성)**

- ① 집행위원회의 인사결정권은 학생회장이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집행위원을 구성한다.
  1. 집행위원회 내 부서의 부장
  2. 집행위원회 내 부서의 차장

**제53조(업무)**

- ①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 ④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 ④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⑤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부서별 회의를 둘 수 있다.

**제54조(학과집행회의)** 집행위원회 제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생회장단의 요구로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7 장 비상대책위원회**

**제55조(지위)**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가 된다.
  1.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 무효되어 학생회장단이 궐위될 경우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모두가 사퇴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3.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모두가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240일이 넘지 않을 때

**제56조(설립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사유가 발생한 후 48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내부호선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과정에 있어서 후보자로 호선될 수 없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단 후보를 선정해야 하며, 제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단을 선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장단 후보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은 중복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에 있어 비상대책위원장만을 선출할 수 있다.
- ⑦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이 소집 및 주재하며,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후 7일 이내 실시한다.
- ⑧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회의의 의결은 제39조에 준한다.
- ⑨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체된다.
  1. 후보자 정보, 투표방식, 투표결과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과정
  2. 선출자 정보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장단 선출결과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체 공지

### 제57조(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신한대학교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로 하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기수를 유지·존속 또는 승계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의 인사결정권은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진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년도 보궐선거까지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58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 임기는 전임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일 부터 2학기 중강일까지로 한다. (단, 재·보궐선거에서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시에는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 제59조(위원장단)

- ①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1조가 되어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로부터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어 학생회장단이 궐위된 경우, 학생회장단 선거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후 15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에 규정된 학생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단 인준이 부결될 경우,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단은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탄핵 및 직무정지를 제외한 제5장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에 준하는 지위·권한·임기·의무를 가진다.
- ⑤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사퇴는 제48조에 준한다.
- ⑥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은 비상대책위원장·비상대책부위원장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⑦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 학생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대표자 과반수의 연서
  2. 본회의 회원 1/5 이상의 연서
- ⑧ 제7항의 연서가 운영위원회로 제출될 경우, 운영위원회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7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 ⑨ 운영위원회 의장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⑩ 제7항의 연서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학과운영위원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제7항의 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 임시의장은 해당 학생총회 개회 직후 학생총회의 인준을 받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⑪ 본조 제10항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본조 제6항의 대상은 학생총회에서 탄핵안의 부의가 부결되거나, 학생총투표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때, 본조 제10항의 임시의장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⑫ 학생총회의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 심의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⑬ 비상대책위원장과 탄핵된 경우 비상대책부위원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⑭ 비상대책위원장단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제10항의 권한대행은 차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의 당선 혹은 비상대책위원장단의 선출 전까지의 임기를 갖는다.

**제60조(업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기간 동안 제53조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장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

**제61조(지위)**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는 학사과정에 재적중인 학생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구이다.

**제62조(직무 및 권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63조(회장단)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공과대학 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공과대학 운영위원 및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부학생회장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가 된다.
- ③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의결기구의 의장이 된다.
-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정회원의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출한다.
- 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의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은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64조(의결기구)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투표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의 의결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③ 의결기구의 업무와 권한, 운영 등은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제65조(집행기구)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의결기구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투표의 개회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서식을 제작한다.
- 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6조(회칙)

- ① 회칙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특성에 맞춰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이 학생총회를 통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수 있다. 단, 본칙에 위배 또는 충돌하는 조항은 제·개정할 수 없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이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의 부재 혹은 부실로 인해 특정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을 시,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의결기구의 의결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단과대학 학생회칙 혹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
-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모든 사항은 해당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을 우선으로 하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한다.

### 제67조(재정)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회원에게 예·결산안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제 9 장 재정

제68조(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 제69조(수입)

- ①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과학생회비, 수익사업 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 ② 2학기 결산 후 재정을 운영하며 남은 수익금은 다음연도 집행위원회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 제70조(회계 연도)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 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1학기 및 2학기를 구분하여 각각 예산과 결산을 처리한다.

### 제71조(학과운영비)

- ① 학과운영비는 매 학기 초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다. 단, 추가납부를 원하는 자는 추가납부 기간에 납부가 가능하다.
- ② 학과운영비 환불은 당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의 정책에 따라 진행한다.
- ③ 학과운영비는 집행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④ 학과운영비는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 학과운영비 집행의 변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72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제73조(예산)

- ① 학생총회의 불발로 인해 예산안 의결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집행할 수 있다.
- ② 예산 집행시에는 모든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결산) 집행위원회는 매 학기 말 전체학생에게 결산을 보고한다.

제75조(정보공개) 집행위원회는 모든 경비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제 10 장 선거

### 제76조(선거원칙)

- ① 본회의 선거권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정회원에게만 주어진다.
- ② 본회의 모든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생회장단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관장 하에 진행된다.

**제77조(시기)** 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에 실시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시기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 제78조(입후보자)

- ① 학생회장단의 입후보 자격은 4 학기 이상 이수 예정 및 이수한 자로 한다.
- ② 학생회장단의 입후보 자격은 직전학기 평점 3.0이상이어야 한다.

### 제79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총선거에 앞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각 단위별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이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⑤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80조(당선자 결정방법)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단일후보 선거 : 재적인원 50% 이상의 투표, 유효 투표의 과반 이상의 찬성.
  2. 다중후보 선거 : 재적인원 50% 이상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
- ② 투표결과 투표율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투표기간을 연장한다.
- ③ 투표의 연장 일수와 횟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하되, 투표기간을 1일의 범위에서 연장 선거를 실시한다.

**제81조(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11장 징계

**제82조(목적)** 징계의 목적은 본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후 보다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생자치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제83조(징계의 종류)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회의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 ②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
- ③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2. 직무정지
3. 해임
-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1호는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요구

**제84조(징계의 해제)** 징계의 해제는 제83조 제1항에 의거해 의결된 기간 후 해제된다. 단, 특수한 상황이라 판단 될 때 징계대상의 회장 및 위원장의 임기 종료 후 재심의 할 수 있다.

### 제85조(징계의 의결)

- ①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개회해 징계처분을 의결한다.
- ② 징계의 의결은 제39조에 의거해 진행한다.
- 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④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는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전, 징계대상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한다.
- ⑤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집행위원회는 징계의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한다.

### 제86조(징계사유)

- ①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칙 위배
  3.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 무단결석
  4. 본회의 [재정운용세칙]에서 정하는 내용
  5.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에서 징계사유로 판단되는 부분
- ②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총회는 본칙에서 정하는 징계로 개선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대상에 대한 학적상 징계처분을 학생지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학생지원처에 건의한다.

**제87조(효력)** 징계의 효력은 제85조에 의한 의결 즉시 발생한다.

## 제 12 장 회칙개정

**제88조(재정·개정·폐지)** 본회 회칙 재정안, 개정안, 폐지안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소프트웨어융합학과 학생회장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89조(결정)** 회칙개정 발의 시 운영위원회 의장은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회칙개정 발의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때, 특별한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긴급소집이 가능하다.